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<sup>,</sup> 의결

**안 건 번 호** 제2023-013-183호

안 건 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4. 4. 24.

## 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1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- 2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한다.
  - 가.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·감독(정상적인 결재 절차 이행 등)을 강화하고,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.
  - 나. 피심인은 가.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,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.

- 3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.
  - 가. 피심인은 가명정보 처리시 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('24.2월)」에 따른 가명 처리 단계별 절차¹)(사전준비→위험성 검토→가명처리→적정성 검토→안전한 관리 등 5단계)를 준수한다.
  - 나. 피심인은 가.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.

## 이 유

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「舊 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이하 "舊 보호법"이라 한다.)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,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 성명	주소	직원 수

# Ⅱ. 사실조사 결과

# 1. 조사 배경

피심인의 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사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이하 '보호위')에 조사를 요청('21. ..)하여 조사를 실시('21.11.4.~'23.5.25.)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현황

 피심인은
 관리 및 안전한
 공급을 위해
 시스템

 ( )\*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
 정보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고 있다.

 \* :
 의 약자로 2002년에 구축

<sup>1)</sup>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('24.2월) 10~38쪽

개인정보파일 (개인정보처리시스템)	수집항목	수집일	수집목적	수집방법	보유기간	건수(명)

\*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: 관리법 시행령

#### 3. 사실조사 결과

#### < 감사원 통지 내용 >

- ○
   는 2019년
   정보를 '가명처리'한 정보를 내부 승인절차

   없이
   ,
   에 전송하였으며,
  -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전송한 것은 '**개인정보 유출**'이나, **유출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** 보호법 제34조(유출통지 등) **위반이므로** 적정 조치 요청

## 가. 기초 사실

- 피심인은 시스템에서 2019년도 데이터 1,763,214건(이하 '이 사건 정보')을 에 전송하였고, 는 해당 데이터를 에 전송한 사실이 있다.
  - (제공목적) 피심인은 · 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집 연구 관련 MOU<sup>2)</sup>를 추진하였으며, 해당 MOU 설명회를 위한 자료 제작을 위해 정보를 에 전송함
  - **(제공항목)** 명, 명, 성별, 직업, 종류, 나이, 나이그룹, 구분(초회, 다회), 형, 종료시각, 기념품 등 **11개 항목**\*
    - \* (NUR\_MASTER), 검사관리(LAB\_MASTER), 종료정보(NUR\_ \_END\_TIME), 기념품 정보(NUR\_SOUVENIR\_OFFER\_INFO) 등 4개 DB 테이블에서 11개 항목만을 추출
- 피심인은 정보시스템( ) 내 4개의 DB테이블에서 11개 정보를 추출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를 생성하였다.

<sup>\*\* 『</sup>공공기록물관리법』시행령 제26조 제1항, 별표1의 제4호

<sup>2)</sup> 협약 계획상 <u>는 기존 행동데이터 분석을 통한 동기요소 발굴, 신규 의 참여 확산을 위한 연구분석 지원</u>, <u>는 다회 의 서비스 이용요금 추가감면 등 할인구조 설계 및 사회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협조 업무를 수행</u>토록 할 예정이었음

#### < 시스템의 4개 DB테이블 설명 >

	테이블명(영문)	테이블명(한 <del>글</del> )	설명	구성항목
1				
2				
3				
4				

< 피심인이 에 제공한 이 사건 정보 $^{*}$  데이터 예시 >

#### (그림삭제)

\*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어려우나,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중복없이고유값(약 99%)을 지니고 있어 DB원본( 정보시스템)으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음

## 나. 주요 경과

#### < 사건 경과 >

- (\*20. . .) 와 의 제안(빅데이터를 활용한 모집 연구방안)으로 MOU<sup>\*</sup> 추진
  - \* , , (초안엔 와 도 있었으나 불참)
- (\*20. . .) 진흥팀, MOU 체결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,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정보팀에 공문으로 요청
- (**'20. . .**) 정보팀은 DB에서 추출한 개인정보파일\*을 진흥팀에 전달하고, 진흥팀은 이를 에 이메일 전달\*
  - \* DB에서 11개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를 생성하였고, 외부 전달시 내부 승인절차는 없었음
- (**'20...**) 는 **분석 결과를 피심인에 회신**하면서,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첨부하여 에 공유
- ('20. . .) 기관간 의견 차이로 인해 MOU 체결 계획 중단
- (**'20. . .**) 피심인 청렴감사팀에 **내부제보가 접수**되어 자체감사<sup>\*</sup> 진행 \* 자체감사 기간: 11. 19. ~ 12. 4,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피심인 내부직원 징계처분('21.6.)
- **('20. . .)** 제공 받은 '정보'의 <mark>파기 확약서 제출</mark>
- **('20. . .)** 제공 받은 '정보'의 <mark>파기 확약서 제출</mark>
- ('21..~ ') 감사원, 피심인 종합감사 중 본 사안 감사 ※ 감사원은 <u>피심인의 자체감사 리스트 검토 도중 해당 사안 인지</u>
- ('21. ..) 감사원, 개인정보위에 피심인 감사결과 통보

## Ⅲ. 위법성 판단

- 1. 관련 쟁점
  - 가. 이 사건 정보의 개인정보 유형 판단
    - ① 이 사건 정보가 익명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(보호법 미적용 여부)
      - 익명정보는 '시간·비용·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'로서 보호법 적용이 제외된다(§58의2)
      - 피심인은 이 사건 **정보를 익명정보라고 주장**하였으나,
        - <sup>①</sup>원본정보가 존재하는 점, <sup>②</sup>·21년 3월~4월 감사원 담당관이 이 사건 정보 중 12건을 선별한 후 피심인의 내부 DB를 활용하여 **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**에 성공한 점을 고려할 때, 이 사건 정보는 **익명처리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**.

< 감사원의 이 사건 정보 복원 과정 도식화 과정 >

(그림삭제)

# ② 이 사건 정보의 <u>'가명정보' 해당 여부</u>

-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'추가정보'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행위 이며, 가명정보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'추가정보'의 사용・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.(법 제2조)
- 한편, **'추가정보**'란 **가명처리과정에서 생성 또는 사용**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 결합될 수 있는 정보이며,
  - \* 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

-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, 즉 원본정보도 추가정보에 포함되며, 이 사건 정보의 경우 DB원본을 이용하여 복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DB원본은 추가정보에 해당한다.
  - \* 추가정보는 피기가 원칙이며, 원본정보처럼 피기가 어려운 경우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별도 분리보관, 관리하여야 함 (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 63p)
- 이 사건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, DB원본정보(추가정보)를 이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가명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.
- 舊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은 **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**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2항은 제3자 제공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이 사건 피심인이 정보시스템 DB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11개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를 생성하고, 이를 에 전달한 것은 법 제28조의2의 '통계작성' 및 '과학적 연구'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.

# 나. 정보 전달행위의 유출 여부 판단

 ○ (감사원 의견) 개인정보처리자인 피심인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처리 권한이 없는 제3자( , )에게 정보가 전달된 것은 유출이며, 유출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4조 위반으로 처분이 필요 하다고 판단했으나,

< 감사원의 피심인 감사보고서( ) 페이지 >

(그림삭제)

- (검토의견)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은 '유출'이란 '법령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 한 것'으로 규정하고 있다.
- 본 건의 경우, <sup>①</sup> 정보 전달에 대해 내부 보고\*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, 정보 전달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피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, 감사원 지적처럼 '제3자 무단제공'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
  - \* 피심인은 '21.11월 개인정보위에 제출한 ' **의견서**'에서 <u>정보 제공에 관해</u> 기관장인 관리본부장에게 구두로 보고하였으며, 제공한 정보는 피심인의 위임전결권에 따라 의사결정된 정보 전달이었다고 진술함<sup>3)</sup>
  - 또한 피심인과 · 사이에 MOU 체결 계획이 있었던 점,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사건 정보 파기를 요청하자 데이터를 파기하고 파기 확약서를 송부한 점, 피심인이 <sup>②</sup>해당 정보에 대해 통제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,
- 이 사건 정보의 전달은 "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"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출이라 보기 어려우며, 유출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.
- 한편,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해당 서비스제공자의 관리·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 다고 판시(대법원 2014. 5.16. 선고 2011다24555, 24562판결)한 바 있으며,
  - 본 건의 경우 '추가정보'가 분리·차단된 가명정보가 외부에 제공된 것으로, 그 수령자로서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'개인정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'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.

<sup>3)</sup> 다만, 문서에 의한 결재절차를 생략한 채 해당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점에 대해 내부징계하였음을 소명함

## 다.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적용여부

## ①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인식이 없었는데, 처분할 수 있는지

- 舊 보호법 제28조의4에 <sup>①</sup>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'처리하는'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, <sup>②</sup>추가 정보에 대한 분리·보관, 접근권한 관리, 기록 보관 등 보호법상 의무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의 **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인식** 없이는 준수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**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**도 있으나,
- 피심인이 이 사건 정보 제공(2020. 9월) 당시 해당 정보가 가명정보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제28조의4<sup>\*</sup> 적용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,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이며,
  - \* 舊 보호법은 2020. 2. 4일 공포되고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. 8. 5일부터 시행됨
- 판례에 따르면, 형법 제16조에서 '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<u>정당한 이유</u>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'고 규정하고 있는데,
  - 그러한 '정당한 이유'가 인정되려면 단<u>순히 법률을 오인하는 것으로는 부족</u>하고 행위 당시 법률전문가, 담당 공무원 등에 진지한 자문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그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 데 귀책이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. (대법원 2000. 8.18. 선고 2000도 2943 판결,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5도835 판결)
- 이에 따라, 피심인이 정보 제공 당시 해당 정보가 가명정보에 해당 하고, 舊 보호법 제28조의4 등의 적용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.

## ② 이 사건 처분시 적용조항

-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에 관한 절차의무 규정인 舊 보호법 제28조의4가 적용된다.
  - 피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원 개인정보로 환원하기 위해 필요한 '추가정보'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, 접근권한을 통제하였으나,
- 가명정보의 처리목적,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 등 **가명정보의 처리**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**기록을** 작성하고 보관하지 않았으므로, 이는 보호법 제28조의4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.
- 또한, 피심인이 **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·감독**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당한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전달 되도록 하였으므로, 이는 **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**에 해당한다.

# 라. 외부기관( , )의 법 위반여부

○ 이 사건 정보의 수령자인 외부기관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을 알아볼 수 없었으므로,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생성되었는데 그 처리를 중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(舊 보호법 §28조의5②), 또는 일부러 재식별을 위한 시도를 했다는(舊 보호법 §28조의5①)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舊 보호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.

# 2. 개인정보의 취급·운영 관련 사실관계

# 가. 가명정보 처리관련 기록을 작성 보관하지 않은 행위

○ 피심인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그 처리목적, 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, 가명정보의 이용내역, 제공받는 자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,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# 나.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

○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하나, 이를 소홀히 하여 정당한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.

## 다.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

○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서 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'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'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<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도(가명정보 처리가이드라인) >



## 3. 위법성 판단

# 가. 가명정보 처리관련 기록을 작성·보관하지 않은 행위

# 1) 관련 법 규정

舊 보호법 제28조의4제2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,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, 舊 시행령(대통령령 제32813호) 제29조의5제2항은 "법 제28조의4 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(1호),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(2호), 가명정보의 이용내역(3호),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(4호),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(5호)을 말한다."라고규정하고 있다.

# 2) 위법성 판단

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나, 피심인이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8조의4제2항, 舊 시행령 제29조의5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 나.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

# 1) 관련 법 규정

舊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, 파견근로자, 시간 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이하 '개인정보처리자'라 한다)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,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·감독을 행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 있다.

# 2) 위법성 판단
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하나, 피심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정당한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 다.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

# 1) 관련 규정

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」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가명처리 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, ②위험성검토 ③가명처리 수행 , ④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, ⑤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'개인 정보의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'를 준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# 2) 위법성 판단

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가명처리 단계별 절차'를 준수하여야 하나, 피심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특정 개인의 재식별 등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**가명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이 필요하다.** 

# 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3. 11. 1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3. 11. 15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 Ⅳ. 처분 및 결정

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8조의4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 제4항제6의2호, 舊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가. 기준금액

舊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舊 보호법 제28조의4 제2항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200만 원을 적용한다.

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(단위 : 만 원)미. 법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법 제75조200400800

제4항제6의2호

< 舊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[별표 2] - 과태료 부과기준 >

## 나. 과태료의 가중

보관하지 않은 경우

「舊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개인정보위 2023. 3. 8. 이하 '舊 과태료 부과지침') 제8조(과태료의 가중)는 "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가중기준(▲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8조의4제2항 위반행위는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[별표2]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 다. 과태료의 감경

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(과태료의 감경)는 "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1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, ▲개인 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사업규모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은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등조사에 적극 협력하였고,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였으므로, 舊 과태료부과지침 제7조 [별표1]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%인 100만 원을 감경한다.

< 舊 과태료 부과지침 [별표 1] - 과태료 감경기준 >

기준	감경사유	감경비율
조사협조·	1.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	기준금액의
자진 시정 등	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	50% 이내

##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8조의4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<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	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 원)			
위반조항	처분 조항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(D) D=(A+B-C)	
제28조의4 제2항	법 제75조제4항제6의2호	200	-	100	100	

# 2. 시정조치 명령

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한다.

- 가.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·감독(정상적인 결재 절차 이행 등)을 강화하고,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.
- 나. 피심인은 가.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.

## 3. 개선권고

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.

- 가. 피심인은 가명정보 처리시 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('24.2월)」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⁴)(사전준비→위험성 검토→가명처리→적정성 검토→ 안전한 관리 등 5단계)를 준수한다.
- 나. 피심인은 가.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,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.

<sup>4)</sup>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('24.2월) 10~38쪽